

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(안)

의안 번호	24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
-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·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
- 2004. 6. 11 한국토지공사(충북지사)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공유재산을 "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"에 무상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심의사항

- 위 치 :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804-1외 2필지
(오창과학산업단지 내)
- 면 적 : 224,254.2㎡(67,837평)
- 용 도 : 연구시설 용지
- 기 간 : 3년간 무상(필요시 갱신허가)
- 신청인 :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

3. 관계법령 : 별첨

- 지방재정법 제82조, 제83조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26호, 동조제2항제7호, 제89조제5호
-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3조,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,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

관계 법령

< 지방재정법 >

제82조 (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) 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·매각·교환·양여·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,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1999.1.21>

1.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

2.~3. (생략)

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1999.1.21>

제83조 (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) ① (생략)

② 잡종재산의 대부·매각·교환·양여·신탁 및 사권설정에 관한 사항과 대부요율, 대부료의 산정방법, 대부료의 감면, 가격평가, 매각대금납부방법, 대물변제의 범위 등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<개정 99. 1. 21>

< 지방재정법시행령 >

제88조 (잡종재산의 대부) ①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익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. 다만, 대부신청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.

1.~25. (생략)

26.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·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

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

②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. <개정 1994.9.29, 1999.4.30, 2000.10.20, 2002.11.29>

1.~6. (생략)

7.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·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

③~⑦ (생략)

제89조 (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)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에 건물, 구거·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<2002. 11. 29>

5. 제88조제1항제16호·제22호 또는 제2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당해 대부기간의 만료시 그 대부받은 재산의 매입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

<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>

제13조(사용·수익허가기간) 행정재산·보존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·수익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하여야 한다.

<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>

제3조(관리자의 지정)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.

②관리자는 건설종합본부장으로 보하도록 한다.(개정 2001. 9. 13)

<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>

제4조(준용규정) 공영개발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,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·동법시행령, 지방재정법·동법시행령 및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,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,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.

<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>

제3조 (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)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.

사업 계획

韓國基礎科學支援研究院

오창 센터 造成計劃

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현황

1. 연혁

- 88. 8. 한국과학재단 부설 「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」 설립
- 92. 3~4. 4개지역(서울, 부산·대구, 광주)분소 설치
- 99. 5. 「재단법인기초과학기술연구소」 설립
- '01. 1. 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」으로 명칭 변경

2. 역할·기능: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

- 첨단 연구장비의 개발·설치·운영, 연구지원 및 장비공동 활용
- 전문연구인력 및 첨단장비를 통한 연구·개발·장비이용 지원서비스
- 대형 공동연구시설 개발·설치·운영 및 공동연구 등

3. 조직·인원·시설

- 조직 : 1사업단 5부 4실 5과 6개지역분소
- 인력 : 189명(연구 152, 지원 37) ※Ph D. 82명
- 시설 : 부지 32,765평(대덕), 건물 13,214평(대덕)

② 오창센터 조성계획

- 기본방향 및 전략
 - BT, NT 기술의 클러스터 지원센터로 설치·운영
 -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장비·개발의 중심지로 발전

- 위 치 : 오창과학산업단지 연구타운내 100천평
- 규 모 : 부지 80천평, 건물 19천평/9개동
- 사 업 비 : 235,500백만원(국비)
- 사업기간 : 2004 ~ 2013(10년)
- 주요사업내용 : 3개분야 9개사업 (9개동/19천평)

사업명	주요기능	규모	사업비
1.인프라 구축사업 분야(BT,NT 연구장비)	①차세대NMR 구축	1,000평	183억원
	②바이오이미징 사업	3,000평	500억원
	③나노특성평가 사업	1,500평	400억원
2.장비개발사업 분야	④차세대기가급 NMR장비개발	2,000평	400억원
	⑤Bio-나노기기 개발	2,000평	130억원
	⑥초고자장 바이오 질량분석	1,500평	162억원
3.지원사업 분야	⑦첨단과학체험 사업	3,000평	300억원
	⑧Guest House 건설	2,000평	80억원
	⑨e-science동 건설	3,000평	100억원

[3] 기대효과

- 직접효과 예측(가시적 효과)
 - 생산유발효과 : 4,861억원, 소득유발효과 : 1,315억원,
고용유발효과 : 7,000명 정도
- 간접효과(비가시적 효과)
 - 첨단 BT, NT산업육성을 위한 물적·인적 인프라 확보
 - 오송·오창단지의 입지 강화 → 세계 첨단기술지역으로 부각
 - 관련 산업체 및 연구인력 유입 촉진
 - 도내 기업체 기술이전 및 첨단분야 연구인력 양성 등